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2022.12.9.)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목 차

[보건소 소관]

◆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I	제안 개요	1
II	2023년 마포구 예산 편성 현황	1
III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편성 현황	6
	① 세입·세출 총괄 현황	
	② 일반회계 세입현황	
	③ 일반회계 세출현황	
	④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IV	2023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8
V	검토결과(검토의견)	19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22-122
번호	22-123

2022. 12. 9.
전문위원 신준호

I. 제안 개요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보건소)

나. 제 출 일 : 2022. 11. 15.

다. 회 부 일 : 2022. 11. 18.

2.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II. 2023년 마포구 예산 편성 현황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마포구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89% 증가된 총 7,780억 원이며, 재정자립도¹⁾는 32.94%로 전년대비 0.38% 증가했으며, 재정자주도²⁾는 50.03%로 전년대비 △0.91% 낮아졌음.
 - 일반회계는 7,380억 원으로 전년대비 4.32% 증가함.
 - 특별회계는 4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8.72% 감소함.
- 기금운용계획안은 602억 원으로 전년대비 △15억원이 감소함

1) 재정자립도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총규모

2) 재정자주도 = 자체재원 + 보조금 제외한 의존재원(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일반회계 총규모

가. 2023년도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2023 예산액	2022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78,052,747	763,613,887	14,438,860	1.89%
일반회계	738,026,483	707,458,921	30,567,562	4.32%
특별회계	40,026,264	56,154,966	△16,128,702	△28.72%
의료급여기금	584,000	547,290	36,710	6.71%
마포농수산물시장	5,897,798	4,502,089	1,395,709	31.00%
주차장	31,488,866	40,846,528	△9,357,662	△22.9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1,600	8,855,059	△8,553,459	△96.59%
건축안전	1,754,000	1,404,000	350,000	24.93%

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구 분	2023년도말 조성액 ①=②+③-④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②	증 감 ⑤=①-②
		수입③	지출④		
합 계	60,202,169	12,915,591	14,416,324	61,702,902	△1,500,733
1 남북교류협력기금	615,800	58,002	30,000	587,798	28,002
2 재난관리기금	6,366,399	1,573,058	875,857	5,669,198	697,201
3 자활기금	1,600,324	36,000	96,478	1,660,802	△60,478
4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334,664	436,127	1,773,420	1,671,957	△1,337,293
5 양성평등기금	2,160,002	35,000	35,000	2,160,002	0
6 중소기업육성기금	2,180,571	3,489,719	5,000,560	3,691,412	△1,510,841
7 공유재산관리기금	30,447,237	1,843,000	1,712,100	30,316,337	130,900
8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916,293	20,678	30,420	926,035	△9,742
9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943,925	142,610	184,258	985,573	△41,648
10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8,432,363	3,524,384	2,322,386	7,230,365	1,201,998
11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640,299	159,440	137,940	618,799	21,500
12 옥외광고발전기금	897,524	350,000	294,800	842,324	55,200
13 도로굴착복구기금	2,519,285	1,135,695	1,303,540	2,687,130	△167,845
14 식품진흥기금	2,147,483	111,878	619,565	2,655,170	△507,687

2. 세입·세출예산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38,026,483	707,458,921	30,567,562	4.32%
지방세수입	184,743,461	174,442,775	10,300,686	5.90%
세외수입	58,364,505	55,911,019	2,453,486	4.39%
지방교부세	18,366,000	22,223,000	△3,857,000	△17.36%
조정교부금등	107,783,312	107,784,484	△1,172	△0.00%
보조금	322,566,545	306,145,133	16,421,412	5.3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202,660	40,952,510	5,250,150	12.82%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40,026,264	100.00%	56,154,966	100.00%	△16,128,702	△28.72%
세외수입	22,954,096	57.35%	22,578,374	40.21%	375,722	1.66%
경상적세외수입	16,469,811	41.15%	15,606,957	27.79%	862,854	5.53%
임시적세외수입	2,821,885	7.05%	3,210,457	5.72%	△388,572	△12.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662,400	9.15%	3,760,960	6.70%	△98,560	△2.62%
보조금	885,600	2.21%	1,210,190	2.16%	△324,590	△26.82%
국고보조금등	593,600	1.48%	936,545	1.67%	△342,945	△36.62%
시·도비보조금등	292,000	0.73%	273,645	0.49%	18,355	6.7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186,568	40.44%	32,366,402	57.64%	△16,179,834	△49.99%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380억2,648만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074억5,892만1천원 보다 4.32%, 305억6,756만2천원 증액 편성됨.
- 지방세 수입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5.9% 증가된 1,847억4,346만1천원이고, 세외수입은 지방세 징수 실적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등으로 전년대비 4.39% 소폭 증가된 583억6,450만5천원임.
-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로 전년대비 △17.36% 감소된 183억6,600만원임.

- 아울러, 보조금은 국·시비 매칭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5.36% 증가된 3,225억6,654만5천원임.
- 5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은 ‘22년도 예산보다 △28.72%, △161억2,870만2천원 감액된 400억2,626만4천원을 편성 요청함.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66% 증가된 229억5,409만6천원이고, 보조금은 발전소지원사업의 예산감소로 전년대비 △26.82% 감소된 8억8,560만원임.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38,026,483	100.00%	707,458,921	100.00%	30,567,562	4.32%
인건비	114,272,717	15.48%	111,263,657	15.73%	3,009,060	2.70%
물건비	48,963,754	6.63%	47,200,341	6.67%	1,763,413	3.74%
경상이전	511,171,751	69.26%	479,520,020	67.78%	31,651,731	6.60%
자본지출	38,912,251	5.27%	51,852,171	7.33%	△12,939,920	△24.96%
내부거래	3,823,966	0.52%	6,000,000	0.85%	△2,176,034	△36.27%
예비비및기타	20,882,044	2.83%	11,622,732	1.64%	9,259,312	79.67%

라.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0,026,264	100.00%	56,154,966	100.00%	△16,128,702	△28.72%
인건비	3,030,296	7.57%	3,204,450	5.71%	△174,154	△5.43%
물건비	1,965,851	4.91%	2,122,458	3.78%	△156,607	△7.38%
경상이전	16,656,658	41.61%	14,702,026	26.18%	1,954,632	13.29%
자본지출	6,167,554	15.41%	12,967,596	23.09%	△6,800,042	△52.44%
융자및출자	500	0.00%	500	0.00%	0	0.00%
예비비및기타	12,205,405	30.49%	23,157,936	41.24%	△10,952,531	△47.29%

-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7,780억5,274만7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22년도 예산안 대비 4.32%, 305억6,756만2천원 증액된 7,380억2,648만3천원으로 요청하고
 - 특별회계는 ‘22년도 예산안 대비 △28.72%, △161억2,870만2천원 감액된 400억2,626만4천원을 편성 요청함.
- 세출예산의 전반적인 증가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과 행정운영경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소폭 상승하였고, 아울러 민선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공약 및 역점사업비가 적극 반영되었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예산이 증대되었으며, 중대재해 예방 및 생활안전 등 구민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음.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 관광 도시 조성 사업비가 편성되었음.

Ⅲ. 보건소 소관 예산 편성 현황

1. 세입·세출 총괄현황

가. 세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6,217,355	19,475,499	△3,258,144	△16.73%
일반회계	16,217,355	19,475,499	△3,258,144	△16.73%
특별회계	0	0	0	0

- 202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162억1,735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4억7,549만9천원 대비 △16.73%, △32억5,814만4천원 감소된 규모로서 마포구 전체 세입 예산의 2.08%에 해당하며,

나. 세출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6,990,763	31,621,988	△4,631,225	△14.65%
일반회계	26,976,059	31,621,988	△4,645,929	△14.69%
특별회계	14,704	0	14,704	순증

- 세출예산은 269억9,076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6억2,198만8천원 대비 △46억3,122만5천원, △14.65% 감소하여 마포구 전체 세출예산의 3.47%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현황

가.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6,217,355	19,475,499	△3,258,144	△16.73%
세외수입	454,557	391,535	63,022	16.10%
경상적세외수입	295,597	293,895	1,702	0.58%
사용료수입	155,742	158,499	△2,757	△1.74%
수수료수입	139,855	135,396	4,459	3.2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8,960	97,640	61,320	62.80%
과징금	87,140	27,140	60,000	221.08%
과태료	71,820	70,500	1,320	1.87%
보조금	15,762,798	19,083,964	△3,321,166	△17.40%
국고보조금등	6,520,153	8,027,934	△1,507,781	△18.78%
국고보조금등	6,520,153	8,027,934	△1,507,781	△18.78%
시·도비보조금등	9,242,645	11,056,030	△1,813,385	△16.40%
시·도비보조금등	9,242,645	11,056,030	△1,813,385	△16.40%

-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수수료, 의료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로 구분되며, 전년대비 16.10% , 6,302만2천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보건행정과의 보건의료수수료와 위생과의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은 157억6,279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7.40%, △33억2,116만6천원 감소하였음.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가내시액 감소에 따른 것임.

나.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총 계	16,217,355	19,475,499	△3,258,144
보건행정과	2,391,945	2,091,887	300,058
위생과	501,000	405,680	95,320
건강동행과	12,701,506	16,342,851	△3,641,345
의약과	622,904	635,081	△12,177

-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수수료와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3억5만8천원 증액된 23억9,194만5천원임.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의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유족지원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어 가내시액이 반영된 것임.
- 위생과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9,532만원 증액된 5억100만원임. 이는 ‘식품위생과징금’ 6,000만원, ‘건강기능식품과태료’ 320만원의 신규 편성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250만원의 신규 편성으로 인한 것임.
- 식품위생과징금은 행정착오로 기금 수입과 중복 편성됨.
- 건강동행과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36억4,134만5천원이 감소한 127억150만6천원이 편성됨.
- 의약과는 전년대비 △1,217만7천원 감소한 6억2,290만4천원을 편성함. 이는 기타사용료인 관리비 수입(아현문화건강센터) △1,475만7천원과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150만원, 보조금 △792만원 감액 편성한 것임.

3. 일반회계 세출현황

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
총 계	26,976,059	100.00%	31,621,988	100.00%	△4,645,929	△14.69%
인건비	4,322,146	16.02%	4,197,836	13.28%	124,310	2.96%
물건비	1,616,472	5.99%	1,844,417	5.83%	△227,945	△12.36%
일반운영비	1,283,672	4.76%	1,516,717	4.80%	△233,045	△15.37%
여비	209,820	0.78%	204,180	0.65%	5,640	2.76%
업무추진비	69,580	0.26%	70,120	0.22%	△540	△0.77%
재료비	53,400	0.20%	53,400	0.17%	0	0.00%
경상이전	20,244,140	75.04%	25,532,935	80.74%	△5,288,795	△20.71%
일반보전금	699,680	2.59%	914,960	2.89%	△215,280	△23.53%
포상금	5,600	0.02%	54,114	0.17%	△48,514	△89.65%
연금부담금등	362,707	1.34%	429,109	1.36%	△66,402	△15.47%
배상금등	1,000	0.00%	1,000	0.00%	0	0.00%
민간이전	16,165,136	59.92%	20,686,539	65.42%	△4,521,403	△21.86%
자치단체등이전	2,538,487	9.41%	2,972,258	9.40%	△433,771	△14.59%
전출금	471,530	1.75%	474,955	1.50%	△3,425	△0.72%
자본지출	793,301	2.94%	46,800	0.15%	746,501	1595.09%
시설비및부대비	292,165	1.08%	0	0.00%	292,165	순증
자산취득비	501,136	1.86%	46,800	0.15%	454,336	970.80%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9억 7,605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4,592만 9천원, △14.69% 감소하였음.
- 주요 증가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 2억9,216만5천원 순증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전년대비 970.80%, 4억5,433만6천원 증액 편성함. 반면 경상이전 포상금은 전년대비 △89.65%, △4,851만4천원 감액되었음. 이는 건강동행과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포상금 감소에서 기인한 것임.

나.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6,976,059	100.00 %	31,621,988	100.00 %	△4,645,929	△14.69 %
보건행정과	3,992,714	14.80 %	4,056,348	12.83 %	△63,634	△1.57 %
위생과	792,166	2.94 %	702,025	2.22 %	90,141	12.84 %
건강동행과	19,424,864	72.01 %	24,848,538	78.58 %	△5,423,674	△21.83 %
의약과	2,766,315	10.25 %	2,015,077	6.37 %	751,238	37.28 %

다.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

1) 보건행정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보건행정과	3,992,714	4,056,348	△63,634
보건의료서비스 운영	3,821,528	3,885,227	△63,699
보건소 기능 강화	2,882,582	2,574,422	308,160
통합민원서비스	137,908	105,063	32,845
건강도시 조성	8,680	8,680	0
지역사회건강조사	69,932	69,932	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60,000	560,000	0
암조기검진사업	264,500	314,000	△49,500
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	279,000	279,000	0
통합건강증진사업	10,000	10,000	0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사업	234,500	0	234,500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38,176	35,489	2,687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0,764	20,768	△4
자살 유족 지원사업	54,400	0	54,400
정신보건사업	836,962	761,706	75,256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49,760	148,184	1,576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8,000	61,600	△43,60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00,000	200,000	0
감염병 관리	938,946	1,310,805	△371,859
방역소독	310,178	261,848	48,330
에이즈예방관리	321,325	220,845	100,480
주요감염병표본감시	920	920	0
국가결핵관리사업	242,279	239,523	2,756
결핵검진사업	8,290	7,390	900
감염병예방관리	55,954	580,279	△524,325
행정운영경비	171,186	171,121	65
인력운영비(보건소장실)	36,015	35,542	473
기본경비	135,171	135,579	△408

- 보건행정과는 39억9,271만4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6,363만4천원 감소 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14.80%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행정과 신규 편성 내역은 ‘통합민원서비스’ 보건소 1층 비상재해 탈출구 설치공사 997만원,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사업’ 2억3,450만원,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2,076만4천원, ‘자살 유족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5,440만원임.
- 주요 증액 내역은 ‘통합민원서비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3,284만5천원,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7,567만 6천원, ‘방역소독’ 신규차량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3,690만9천원, ‘에이즈예방관리’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 1억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감액 내역은 ‘암조기검진사업’ 암검진비 건강보험공단 예탁 △ 4,501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4,360만원, ‘감염병예방관리’ 코로나19 해외입국자 및 확진자 지원 관련 비용 감소로 사무관리비 △3억73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함.

2) 위생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위 생 과	792,166	702,025	90,141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76,117	30,106	46,011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76,117	30,106	46,011
식품공중위생업신고 · 관리	19,590	18,506	1,084
위생업소 지도점검	50,237	5,310	44,927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6,290	6,290	0
안전한 식품유통문화 정착	606,138	557,388	48,750
식품위생 관리	606,138	557,388	48,750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29,918	31,168	△1,250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526,220	526,220	0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50,000	0	50,000
행정운영경비	109,911	114,531	△4,620
기본경비	109,911	114,531	△4,620
기본경비	109,911	114,531	△4,620

- 위생과는 7억9,216만6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9,014만1천원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2.94%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편성 내역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행정차량(중형 승합)구입 4,222만7천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3) 건강동행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건강동행과	19,424,864	24,848,538	△5,423,674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13,489,220	17,972,079	△4,482,859
모자보건관리	3,027,111	3,233,131	△206,020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34,637	21,977	12,660
햇빛센터 운영	195,695	0	195,695
모자보건사업 인력운영비	27,497	27,497	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6,702	8,034	△1,33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400	2,400	0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26,940	33,611	△6,671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652,889	400,202	252,687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15,681	70,537	45,144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38,000	0	38,00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5,000	30,960	4,04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6,000	48,980	△22,980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5,500	3,380	2,12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332,000	431,971	△99,97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1,201,940	1,490,180	△288,240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6,170	322,428	△316,258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30,932	234,612	△3,68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12,280	12,080	200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50,500	67,462	△16,962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16,000	16,000	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8,348	8,820	△472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	2,000	2,000	0
예방접종사업	7,318,517	11,680,533	△4,362,016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27,240	26,780	460
국가예방접종 실시	4,806,061	5,162,862	△356,801
자체예방접종사업	133,575	133,885	△310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운영	47,235	120,160	△72,925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304,406	6,236,846	△3,932,440
	생활건강관리	1,353,042	1,170,325	182,717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19,420	226,182	△6,762
	흡연구역운영관리	154,560	0	154,560
	금연지도원운영	18,420	0	18,420
	건강증진사업	74,571	73,654	917
	영양플러스사업	246,524	243,948	2,576
	싱겁게 먹는 배움터	22,000	22,000	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52,151	250,606	1,545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	38,918	38,177	741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19,986	211,670	8,316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78,856	77,192	1,664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사업	22,736	21,996	740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교육	2,940	2,940	0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	1,960	1,960	0
	방문보건사업	1,790,550	1,888,090	△97,540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212,320	1,368,000	△155,680
	국가치매치료관리비(전환사업)	103,960	103,960	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4,656	4,800	△144
	재가암환자관리(전환사업)	12,000	12,000	0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	52,160	43,400	8,760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162,950	139,394	23,556
	마을건강센터 운영	14,168	11,168	3,000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228,336	205,368	22,968
	출산가정 지원	3,454,360	4,322,360	△868,000
	건강가정지원사업	3,454,360	4,322,360	△868,000
	출산장려지원사업	3,454,360	4,322,360	△868,000
	행정운영경비(건강동행과)	2,481,284	2,554,099	△72,815
	인력운영비(건강동행과)	2,352,309	2,426,139	△73,830
	인력운영비	256,042	242,574	13,468
	인력운영비(서울아기건강첫걸음)	251,976	236,834	15,142
	인력운영비(찾동방문간호사)	1,041,929	1,018,908	23,021
	인력운영비(통합방문간호사)	802,362	927,823	△125,461
	기본경비(건강동행과)	128,975	127,960	1,015
	기본경비	128,975	127,960	1,015

- 건강동행과는 194억2,486만4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4억2,367만4천원 감소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72.01%를 차지하고 있음.
- 건강동행과 신규 편성 내역은 ‘햇빛센터 운영’ 햇빛센터 조성 공사비 등 1억9,569만5천원,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 등 3,8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운영’ 사무관리비(예진표 인쇄) 50만원, ‘흡연구역운영관리’ 흡연부스 설치 등 1억5,456만원, ‘금연지도원 운영’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 1,842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성과평가 위원 참석수당 90만원(수탁자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및 협약서 제작),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 방문간호의료소모품 구입 480만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통합방문간호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257만원과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20만원 임.
- 주요 증액 내역은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엽산제,철분제 구매 등 의료및구료비 1,342만원,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5,268만7천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514만4천원, ‘자체예방접종사업’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등 936만2천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37만3천원(임산부등록 등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전문인력 교육비 인원추가), ‘인력운영비(찾동방문간호사)’ 찾동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등 4,01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함.
- 주요 감액 내역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9,997만1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2억8,824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3억5,680만1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9억3,244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억5,658만원, ‘출산장려지원사업’ 출산축하금 지급 △2억4,500만원, ‘출산장려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지급 △6억2,200만원 감액 편성함.

4) 의약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의약과	2,766,315	2,015,077	751,238
건강하고 안전한 웰빙공동체 실현	2,148,069	1,473,890	674,179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	1,023,680	1,043,654	△19,974
아현문화건강센터	471,530	476,955	△5,425
아현건강증진센터(지소)	96,192	82,992	13,20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87,600	87,300	300
의료기관 관리	7,247	7,247	0
의약품 조제·투약	4,980	4,980	0
치아건강관리	141,804	129,778	12,026
건강정보&생활안전체험관 운영	63,639	60,708	2,931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40,273	80,040	△39,767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11,520	10,600	920
서강보건지소운영	19,425	24,605	△5,180
건강돌봄서비스	79,470	78,449	1,021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793,306	360,606	432,700
건강검진	18,617	18,617	0
검사 및 검진사업	605,908	196,837	409,071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60,000	60,000	0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11,790	8,190	3,600
의약품 안전관리	2,880	2,880	0
재활보건사업	94,111	74,082	20,029
응급의료관리	331,083	69,630	261,453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57,350	60,450	△3,100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10,000	9,180	820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263,733	0	263,733
행정운영경비(의약과)	618,246	541,187	77,059
인력운영비(의약과)	498,395	428,785	69,610
인력운영비(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39,065	37,061	2,004
인력운영비(아현건강증진센터)	150,711	149,297	1,414
인력운영비(서강보건지소)	38,928	37,646	1,282
인력운영비(지역사회중심재활 및 건강돌봄서비스)	204,707	204,781	△74
인력운영비(의약품 안전관리)	64,984	0	64,984
기본경비(의약과)	119,851	112,402	7,449
기본경비	119,851	112,402	7,449

- 의약과는 27억6,631만5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7억5,123만8천원, 37.28%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10.25%를 차지하고 있음.
- 의약과 신규 편성 내역은 ‘치아건강관리’ 치과용 정수장비 구매 및 구강 보건센터 고압증기멸균기 구매비 1,010만원, ‘서강보건지소운영’ 재활프로그램 강사비 240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간호 및 상담 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2억6,373만3천원, ‘인력운영비(의약품 안전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의약품 안전관리) 기타직보수 6,498만4천원을 편성함.
- 주요 증가 내역은 ‘아현건강증진센터(지소)’ 강사비 행사실비지원금 1,131만원, ‘검사 및 검진사업’ 진단검사의학실 검사용시약 및 소모품 등 의료및구료비 8,204만8천원, 영상의학실 장비 및 진단검사의학실 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6,708만원, ‘재활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002만9천원 임.
- 주요 감소 내역은 ‘서강보건지소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예산절감을 위해 △758만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학생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하여 △3,976만7천원 감액 편성함.

4.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없음

5.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4,704	0	14,704
보건행정과		14,704	0	14,704
	보건의료서비스 운영	14,704	0	14,704
	보건소 기능 강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704	0	14,704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	14,704	0	14,704

- 보건행정과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 1,470만4천원을 신규 편성함. 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노후 및 고장난 냉난방기(3대) 교체공사를 통해 센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임.

IV. 2023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

가. 기금조성현황

(단위: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2,655,170	111,878	619,565	△507,687	2,147,483	

나. 자금운용(수입·지출)계획

1)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수 입 합 계	2,767,048	2,811,454	△44,406
세외수입	93,128	116,039	△22,911
경상적세외수입	93,128	116,039	△22,911
징수교부금수입	58,440	93,354	△34,914
이자수입	34,688	22,685	12,003
보건수입등및내부거래	2,673,920	2,695,415	△21,495
보건수입등	2,673,920	2,695,415	△21,495
융자금원금수입	18,750	53,332	△34,582
예치금회수	2,655,170	2,642,083	13,087

2)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지 출 합 계	2,767,048	2,811,454	△44,406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619,565	619,565	0
식품진흥활동(식품진흥기금)	619,565	619,565	0
식품진흥기금 운용	619,565	619,565	0
재무활동(위생과)	2,147,483	2,191,889	△44,406
보건지출(식품진흥기금)	2,147,483	2,191,889	△44,406
여유자금예치	2,147,483	2,191,889	△44,406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기금으로서 재원은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등으로 조성되며,
- 주요 지출은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6억1,956만5천원, ‘여유자금예치’로 전년도 대비 △4,440만6천원 감소한 21억4,748만3천원을 편성함.

V. 검토결과

1. 검토의견

- 2023년도 마포구 예산안 편성방향
- 세입예산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는 소폭 상승 예상분을 반영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평가액 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어 반영함.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기침체 및 이월채납액 감소로 지난년도 보다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부동산 관련 과징금, 과태료, 개발 부담금의 부과 예정으로 전년대비 증가가 예상됨.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증가됨. 아울러,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추계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세출예산은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이 적극 반영되었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예산이 증대되었음. 또한 중대재해 예방 및 생활안전 등 구민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 관광 도시 조성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음.
-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2억 1,735만 5천원으로 전

년도 예산액 194억 7,549만 9천원 대비 △16.73%, △32억 5,814만 4천원 감소하였음.

- 주요 세입 감소 요인은 건강동행과 국·시비보조금의 감소에서 기인된 것으로, 국·시비보조금은 보건소 세입예산의 97.2% (157억 6,279만 8천원)로 전년대비 △17.4% 감소하였음.
- 국·시비 매칭 사업인 ‘정신보건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감액으로 구 예산 매칭 비율 증가와 보건복지 혜택의 감소 여부 등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구민의 보건복지 욕구는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구민을 위한 보조금 예산확보에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반면, 세외수입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과태료와 과징금은 전년대비 62.8%, 6,132만원 증가한 1억 5,896만원 편성하였음. 이는 위생과의 식품위생과징금을 신설 세입 조치한 사항과(221.08%, 6,000만원) 식품위생과태료 등의 증액(1.87%, 1,320만원)으로 기인된 것임.
- 이중 식품위생과징금 세입편성은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재원인 과징금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중복 편성한 행정착오로서 식품위생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재원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위해 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중복편성된 것은 감액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안 수정도 불가피해 보임.
-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9억7,605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6억2,198만8천원 대비 △14.69%, △46억4,592만9천원이 감액되었음.

- 보건행정과는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의 감액으로 소폭으로 감편성하고, 위생과는 ‘위생업소 지도점검 차량 구매’,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증액으로 증편성하고, 건강동행과는 ‘햇빛센터 조성 공사’,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 ‘흡연부스 운영관리’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방접종 사업의 ‘국가예방접종’ 과 ‘코로나19예방접종 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액되어 전체 예산은 감편성됨.
- 의약과는 검사 및 검진사업을 위한 ‘영상의학실 장비’,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매 등으로 증액 편성함.
- 부서별 주요사업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보건행정과】 ‘정신건강 토달케어서비스사업’은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3,450만원 신규 편성함, ‘자살 유족 지원사업’은 22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행주체로서 자살사고 발생시 현장출동, 유족 대상 서비스 안내 등 초기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행정처리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5,440만원 신규 편성함.
 -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기금보조금 1,470만4천원을 소요재원으로,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노후화 및 고장난 냉난방기 3대 교체공사를 통해 센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상기 사업은 국가적인 구민 정신건강 복지차원의 사업 추진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대부분 매칭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의 지속여부를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 아울러,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에 있어서 내구연한을 확인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용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논의해야 하겠음.
- **【위생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건강동행과】** ‘햇빛센터 운영’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현 보건소 2층을 ‘햇빛센터’로 설치(총 878㎡)하여 임신·출산·육아 원스톱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햇빛센터 조성 공사비(1억7,719만5천원)를 포함하여 총 1억9,569만5천원을 신규 편성함.
 ‘흡연구역운영관리’는 흡연민원 다발구역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흡연부스 설치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1억5,456만원을 편성함.
 ‘금연지도원운영’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홍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1,842만원을 편성함.
- 흡연부스 설치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이해되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의 책무를 감안하면, 금연 활동 및 금연구역 확대가 바람직해 보이므로 지난 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우리 위원회에서 시범 설치를 승인한 만큼 무분별한 시설 설치보다는 도시 미관 및 구민의 궁극적인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시범 운영의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의약과】**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는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4시간 응급콜 운영과

독거노인 전담반 운영 및 응급환자 구급차 운영 등 인건비(간호인력 4명, 상담인력 4명) 2억823만3천원을 포함하여 총 2억6,373만3천원을 신규 편성함.

-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반면 코로나로 중지됐던 보건소 운영 재개에 따른 일부 사업은 올해보다 늘거나 신규로 편성하였음.
- 보건소는 다른 국에 비해 국·시비보조금 비율이 높아서 의무적 구비 부담이 큰 편임. 지속적인 구비 부담은 구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과 주민편의를 위한 자체사업 추진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 같은 상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으로 더욱 악화되어 국·시비 기준 보조율의 범위가 탄력적이지 않고 보조금 지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므로 국가 및 서울시 사업과 공모 사업 등의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음.
- 따라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비율 인하는 물론, 타당성이 낮은 매칭 사업의 경우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요구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다양한 보건사업이 구민 모두에게 전달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사업별 홍보물에 의지한 마케팅보다는 부서별 통합 홍보 계획을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 위생을 강화하고 구민의 식품영양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기금 수입계획은 과징금, 융자금회수이자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4,440만6천원 감액 편성함. 지출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위생시설 개선사업, 모범음식점 육성,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등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예산과 별도로 조성되는 기금의 경우 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며 재정통제가 엄격하지 않아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특히 사업성기금은 민간이전경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집행된 경우 선심성 지출 여부, 융자성기금은 기금 융자에 대한 회수 여부 등 사후관리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³⁾
- 식품진흥기금은 그 용도의 특성상 일반회계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기금을 통해 사업 추진 시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반회계와는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일반회계 세입처리와 혼동하여 중복 작성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양지숙(20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의 위험요인 분석:기금 감사 및 성과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4).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참고자료]

□ 보건소 신규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편성사유
보건 행정 과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사업	234,500	0	234,500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 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신건강토탈케어 바우처 지원) (매칭사업)
	자살 유족 지원사업	54,400	0	54,400	-자살사고 발생시 현장출동, 유족대 상 서비스 안내 및 초기대응 시행, 자살유족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법률처리, 학자금, 일시주거지원 및 사후 행정처리 및 특수청소 지원 ·보건복지부 ‘22 자살유족 지원사 업 신규사업 시행 (매칭사업)
위생 과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50,000	0	50,000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 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위생·영양관 리 지원 ·총 16개소 (50인미만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시설) ·순회방문지도, 급식소 컨설팅, 식단 및 조 리법 등 안내서 제공, 위생·안전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매칭사업)
건강 동행 과	햇빛센터 운영	195,695	0	195,695	-햇빛센터 건립 및 운영 ·건립기간: 22. 11. ~ 23. 6. ·건립위치 및 방법: 현 모자건강센 터 포함 보건소 2층 리모델링 ·건립면적: 약 878㎡(약 266평) ·사업운영: 임신·출산·육아 원스 톱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민선8기 구청장 공약「임산부 지원 출산장려 구립 ‘햇빛센터’ 건립 및 운영」

부서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편성사유
건강 동행 과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38,000	0	38,000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을 증가에 기여 -사업내용 · 서울시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시비 100%)
	흡연구역운영 관리	154,560	0	154,560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흡연실을 설치·운영 구 민건강증진에 기여 -추진계획 ·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부스 지정 을 위한 현황조사 · 의견수렴 및 사업계획 수립 · 금연구역지정, 흡연부스 설치 및 관리
	금연지도원 운영	18,420	0	18,420	-금연지도원 운영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예방 관리를 통한 담배연기 없는 환경 조성 -사업내용 ·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점검 및 제도, 흡연행위 감시 및 제도, 홍보 -「서울시 마포구 간접흡연피해 방 지조례」 개정(금연지도원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의약 과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263,733	0	263,733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신 속한 의료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 과 건강 보호 -추진계획 · 24시간 응급콜 운영(간호사 4명) · 독거노인 전담반 운영(상담사 4명) ·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을 위한 구 급차(EMS) 운영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